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441
----------	------

발의년월일 : 2013. 9. 16.
발 의 자 : 의회운영위원장

제정이유

-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골자

-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 (안 제2조)
-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기준을 규정함. (안 제3조)
- 업무추진비 지출에 관련된 자료 작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공개에 관련한 사항과 정보공개청구 접수 시 공개하여야 하는 범위와 세부 목록을 명시함. (안 제5조·제6조)

제정조례안 :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예산수반사항 : 해당없음.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 의원이 사용하는 의정 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을 포함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삭제한다.